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윤준병・임호선・서삼석

이병진 · 강선우 · 이원택

신영대 • 민형배 • 서영교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·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·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,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, 통 합 검증체계의 고도화, 신청·접수·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, 준수사 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필요가 있음.

특히,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 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높음.

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,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,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,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
- 5.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
- 6.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

제36조제1항 중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를 "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	제21조(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		
및 종류) ① (생 략)	및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	②		
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			
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		
<u><신 설></u>	5.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		
<u><신 설></u>	6.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36조(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	제36조(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		
청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	청 등) ①		
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			
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			
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			
한 시책을 <u>수립・시행하여야</u>	<u>수립</u> ·시행하고,		
<u>한다</u> .	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		
	합관리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		
	<u>수 있다</u> .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